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22
----------	-----

2019년 2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2월 25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 가. 제안이유
  -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7조제2항제1호 ~ 제3호)
-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제1항)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국·본부 협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8. 10. 25.~ 11. 14.)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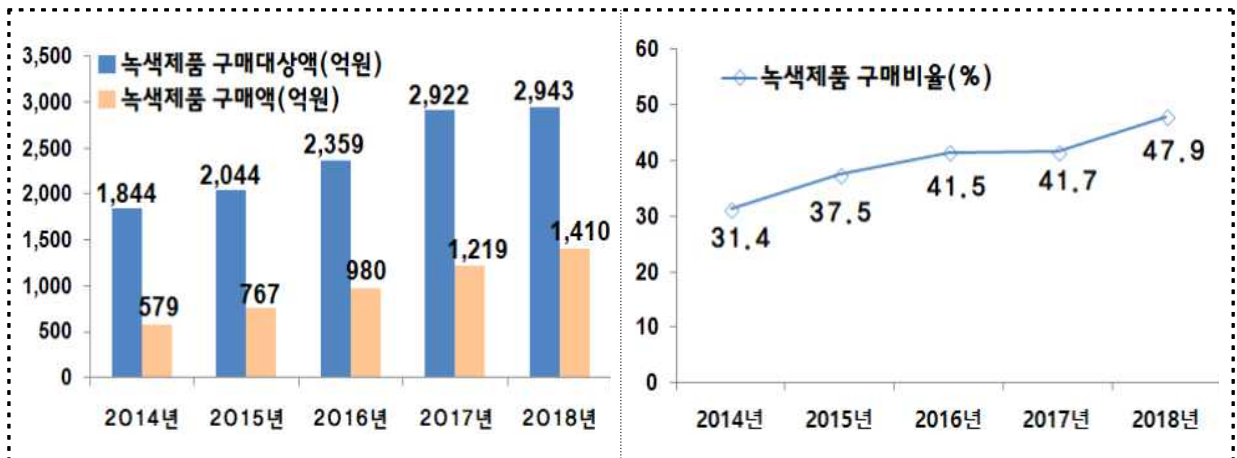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현황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제품을 말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47.9%<sup>1)</sup>로 전년도 41.7%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합동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준임.



1) 인천 57.0%, 부산 54.1%, 울산 53.2%, 경기도 52.0%, 대구 51.8%, 대전 51.1%, 서울 47.9%

그러나 이는 서울시 본청(사업소 포함)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57.7%로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sup>2)</sup> 비율이 43.6%로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2)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 삭제(안 제7조제2항제1호~제3호)

- 현행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과 별개로 법 제6조제5호를 근거로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음.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 5. (생략)

2) 녹색제품 구매비율 40% 이하 자치구 : 중구 27.8%, 광진구 31.2%, 은평구 34.9%, 동대문구 35.5%, 종로구 36.1%, 구로구 37.0%

- 그러나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녹색 제품의 품질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녹색제품의 제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의 예외조항은 법 제6조제2호(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제3호(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의 경우)의 예외조항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의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안 제7조제2항과 같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과 유사하게 중복 규정된 조항과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sup>3)</sup> 하여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에 관한 사항을 최소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3)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항)

-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은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 사무처, 공사·공단, 시 출연 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문화 증진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 또한 필수적일 것임.

이에 환경부 표준 조례안 제15조에서도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요청 및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를 제외<sup>4)</sup>하고 대다수 시·도 조례에 동 사항이 반영되어 있음.

3)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시·도만이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조항(1~3호)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4)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우선구매 요청에 관한 사항 미반영은 서울시 포함 3개 시·도, 자발적 협약에

따라서 안 제13조제1항과 같이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 및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생략)

#### 4)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법 제17조의3에서는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sup>5)</sup>(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12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시·도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고 실제 8개 시·도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울시를 포함한 다수의 광역지자체가 지원센터를 미설치하고 있는 등 친환경소비 문화 확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관한 사항 미반영은 서울시 포함 4개 시·도임.

5) 지원센터 운영은 국고보조사업(국비, 시비 50:50 매칭)의 형태이며,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제12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에 운영 위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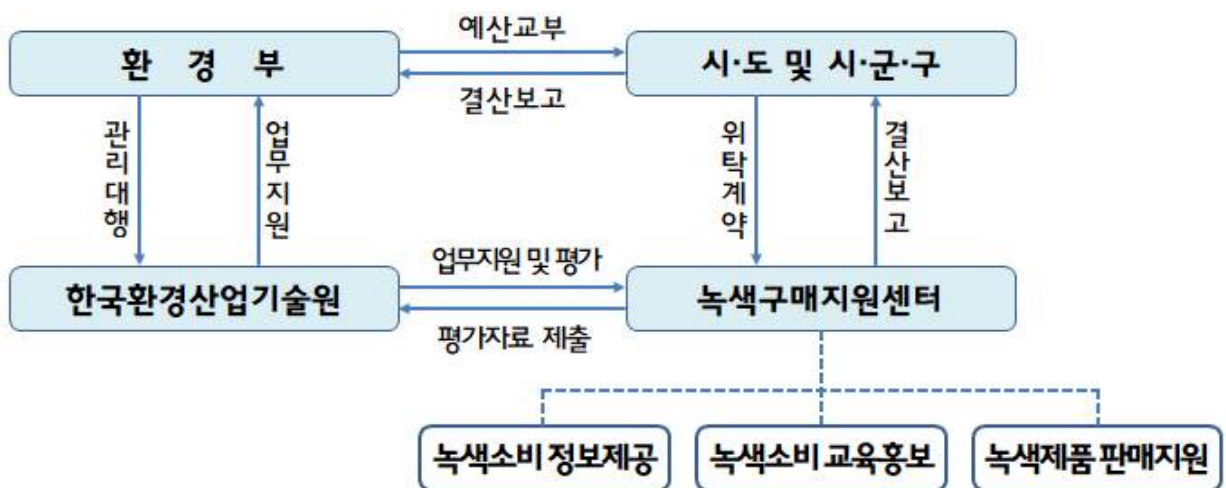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5년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15년)」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 협업을 강화하여 17개 광역 지자체 전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산업·유통과의 파트너십 구축 지원을 밝힌 바 있음.

〈연도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환경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센터 수(누적)	5	10	12	14	17

- 따라서 안 제14조와 같이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맞춰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 등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시의 지원센터 설치가 늦게 추진되는 만큼 조례 개정 이후 지원센터 설치 신청서 제출(시→환경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예산확보(국·시비), 수탁기관 선정 등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절차〉

## [참 고]

### □ 각 시·도별 관련 조례 현황('18년 12월 기준)

연 번	구 분	녹색제품 구매예외 (1~3호)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안 제13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4조)	
			구매요청	자발적협약	경비지원	설치조례	설치여부
1	서울특별시	○	X	X	○	X	X
2	부산광역시	X	○	○	○	○	○
3	대구광역시	○	○	○	○	X	X
4	인천광역시	X	○	○	○	○	○
5	광주광역시	○	○	○	○	○	○
6	대전광역시	X	X	X	○	○	○
7	울산광역시	○	X	X	○	X	X
8	세종특별자치시	X	○	○	○	X	○
9	경 기 도	X	○	○	○	○	○
10	강 원 도	X	○	○	○	○	X
11	충청북도	X	○	○	○	○	○
12	충청남도	○	○	○	○	○	X
13	전라북도	X	○	○	○	X	X
14	전라남도	X	○	X	○	○	X
15	경상북도	X	○	○	○	○	X
16	경상남도	X	○	○	○	X	X
17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5.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추계가 미흡하고 타 광역지자체 설치·운영 사례에 관한 설명이 없음.  
이후 동의안 제출 시 상세 자료를 제출할 것.
- 질의 : 동의안 제출 시 상세한 비용추계 및 타 광역지자체 설치·운영 사례를 제출하겠음.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u>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u></p> <p>② (생략)</p>	<p>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u>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u></p> <p>2. <u>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3. <u>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u></p> <p>4. ~ 5. (생략)</p> <p>③ (생략)</p>	<p>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4.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u>〈신설〉</u></p> <p>(생략)</p> <p><u>〈신설〉</u></p>	<p>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p> <p><u>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u></p> <p><u>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p> <p>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p> <p><u>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u></p> <p><u>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u></p>

현행	개정안
<p>제14조 ~ 제15조 (생략)</p>	<p>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p> <p>제15조 ~ 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p>